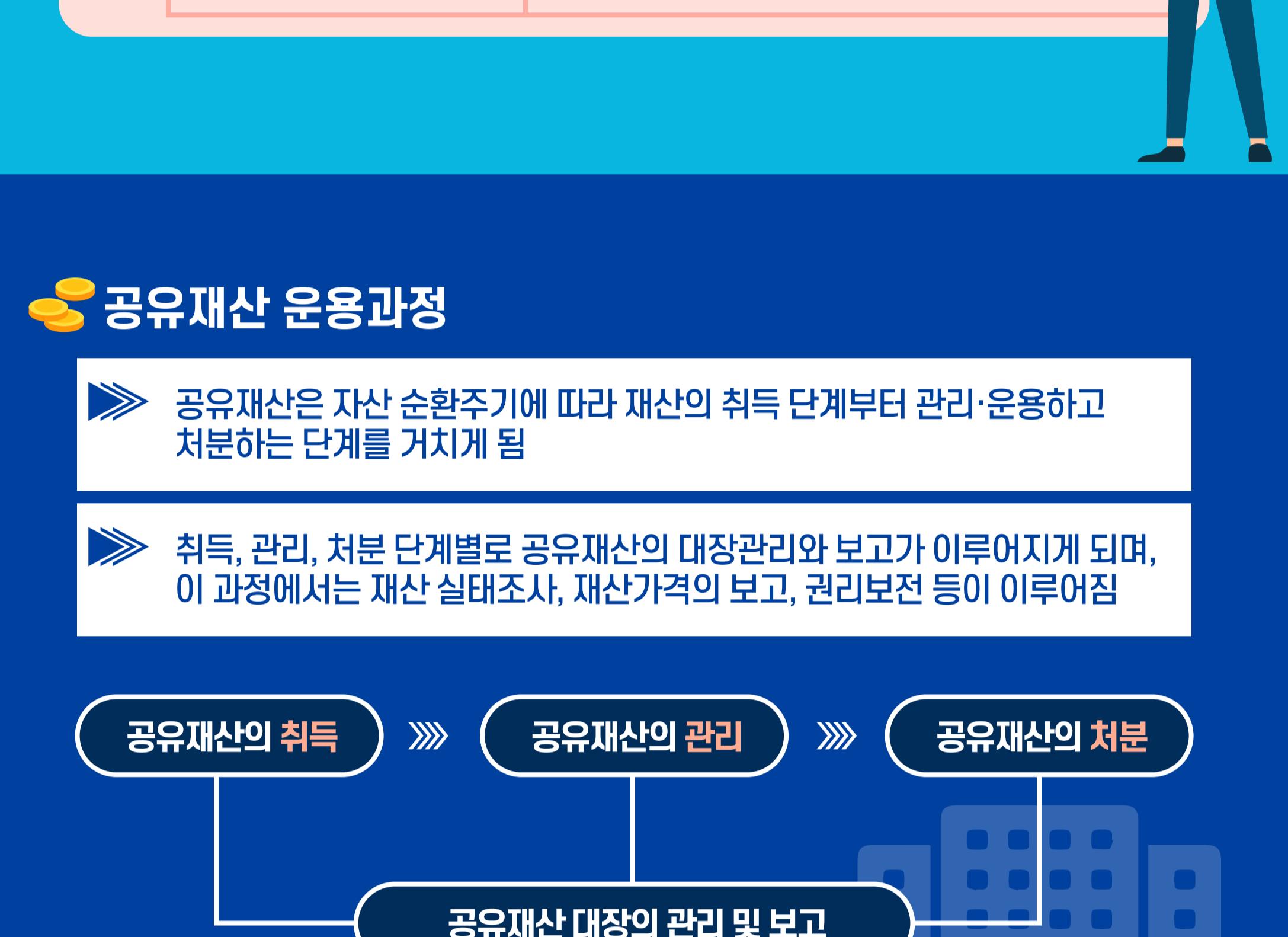


# 공유재산

## 관리 · 운영 분석제도 도입 방안

### ▣ 공유재산 분석제도 도입 필요성



### ▣ 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

구분		공유재산 사례	
공유재산	행정재산	공용재산 (common asset)	청사, 관사, 시·도립 학교, 병원, 도서관, 박물관, 시민회관 등
	공공용재산 (infrastructure asset)	도로, 시·도립 공원, 제방, 구거, 유수지, 하천 등	
	기업용재산 (business asset)	상수도, 하수도, 지하철, 공영개발사업 등	
	보존용재산 (heritage asset)	문화재, 보존림, 민속자료 등	
	일반재산	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 ※매각용 취득재산 등	

### ▣ 공유재산 운용과정

- ▶▶ 공유재산은 자산 순환주기에 따라 재산의 취득 단계부터 관리·운용하고 처분하는 단계를 거치게 됨
- ▶▶ 취득, 관리, 처분 단계별로 공유재산의 대장관리와 보고가 이루어지게 되며, 이 과정에서는 재산 실태조사, 재산가격의 보고, 권리보전 등이 이루어짐

공유재산의 취득 → 공유재산의 관리 → 공유재산의 처분

공유재산 대장의 관리 및 보고

### ▣ 공유재산과 복식부기 자산의 차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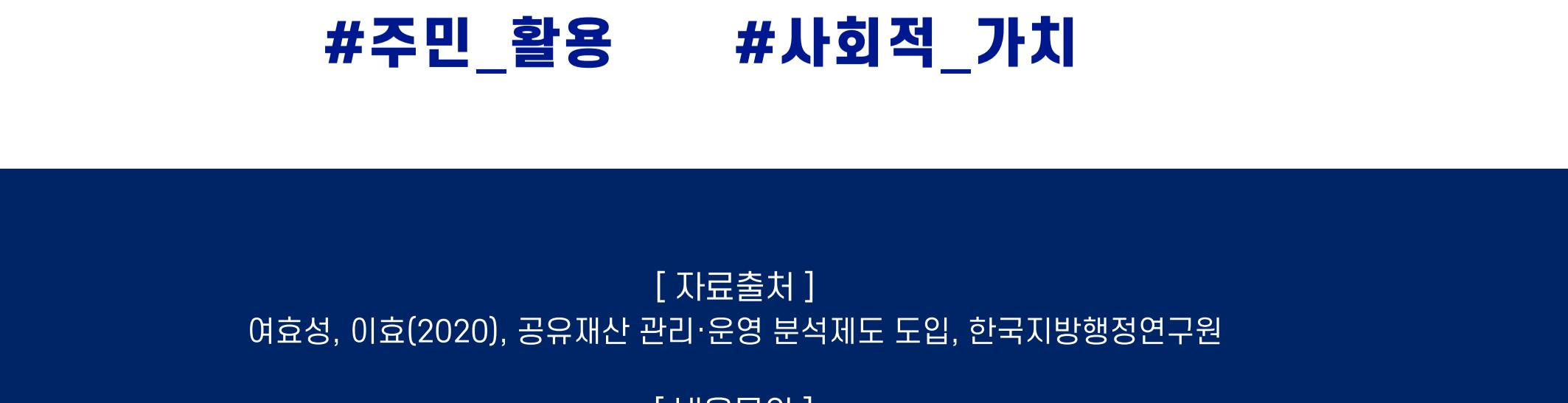
- ▶▶ **공유재산**(현금주의 기준)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재산으로서, 재산의 범위를 “물건과 권리”로 규정하고 있어 현금, 채권, 물품, 미수금 등이 제외됨
- ▶▶ **복식부기 자산**(발생주의 기준)은 미래에 제공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잠재력이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는 지원을 의미하며, 경제적 가치를 지닌 모든 지원을 포함함

구분	공유재산	복식부기 자산
법적 기초	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	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
재산의 범위	물건과 권리 (법령규정)	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원
인식기준	현금주의	발생주의
포괄 범위 비교	공유재산 < 복식부기 자산 (공유재산에는 현금, 채권, 물품 등이 제외됨)	

### ▣ 분석제도의 추진 주체 (예시)



### ▣ 공유재산 분석체계



### ▣ 기대효과



#공유재산

#위탁관리

#재산\_활용

#주민\_활용

#사회적\_가치

[자료출처] 여효성, 이효(2020), 공유재산 관리·운영 분석제도 도입, 한국지방행정연구원

[내용문의]

여효성 (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, 033-769-9877, hsyeo@krila.re.kr)